

항소장

사 건 2023가합30051 손해배상(자)

항 소 인 1. 최애숙
(원고) 강릉시 하슬라로232번길 22-10,3층(교동)

 2. 이상훈
 강릉시 화부산로99번길 12,101동 206호(교동, 강릉교동롯데캐슬1단지)

 3. 정숙기
 강릉시 화부산로99번길 12,101동 206호(교동, 강릉교동롯데캐슬1단지)

피 항 소 인 케이지모빌리티 주식회사(변경 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평택시 동삭로 455-12(칠괴동)
 대표이사 곽재선, 정용원

위 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25. 5. 13.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 5. 23.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최애숙에게 금 267,403,254원, 원고 이상훈, 정숙기에게 각 금 323,529,9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12. 6.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5. 5. 27.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선